

2024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공개초빙 모집분야별 세부심사기준

1. 기초심사 :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의 전공적부 심사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최종학위논문과 연구실적물에 대해 “부”로 판정한 경우에 부적격자로 함

2. 전공심사

1) 인터넷 접수 마감일 전월 말일 기준 4년 이내(2019. 11. 1. ~ 2023. 10. 31.)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40점)

가. 게재학술지 수준

○ 점수 계산 방식 : 학술지 수준 점수 × 인정비율

○ 학술지 수준 점수

- 자연계 : A급 50점, B급 40점, C급 30점, D급 25점, E급 20점, F급 10점

- 인문·사회계 : A급 50점, B급 47점, C급 45점, D급 40점, E급 30점

①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초빙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 [별표 3-2]를 적용함

② 질적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200%(임상 분야는 100%)는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 중 “초빙분야별 질적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수준”에 적합한 우수논문 순으로 지원자가 지정하되 주저자(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만 인정

(단, 지원자가 주저자인 NATURE, SCIENCE, CELL 게재논문은 1편으로도 질적심사가 가능함)

○ 제1저자 : 저자명이 논문의 저자 목록에서 가장 먼저 명기되거나 논문의 주(註)에 가장 앞에 표기된 경우만 인정함. 다만, 논문의 저자 목록에서 가장 먼저 표기된 경우라도 논문의 주(註)에 별도로 제1저자가 표기된 경우에는 논문의 주(註)에 표기된 자를 제1저자로 인정

○ 교신저자 : 논문의 주(註)에 교신저자로 표기된 경우만 인정. 다만, 교신저자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저널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교신저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인정

○ 공동주저자 : 주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모든 주저자를 공동주저자라 함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단, 자연계열의 IF 상위 10% 이내의 논문은 주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주저자 비율을 적용함)

※ 학술지 IF % 값 산출은 JCR랭킹*을 기준으로 함.

*JCR랭킹 기준일 : 해당연도 7. 1.

[예시 : 2020.7.1. ~ 2021. 6.30. 발표 논문은 2020년도 발표(JCR YEAR 2019) JCR랭킹 적용]

나. 논문의 질 : (25점, 22점, 19점, 16점 중 택일) × 인정비율

○ 평가요소는 전계열 공통으로 ①논문의 독창성 ②실험과 이론의 상응 정도 ③논문의 객관성과 충실도

④논리적 엄밀성 ⑤결론의 실용성(창의성 및 타당성)으로 함

다. 전공일치도 및 지원자의 논문기여도 : (25점, 22점, 21점, 18점 중 택일) × 인정비율

○ 초빙분야별 질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수준 : 초빙분야별 연구 실적 참조(공고문 8p)

2) 인터넷 접수 마감일 전월 말일 기준 4년 이내(2019. 11. 1. ~ 2023. 10. 31.)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10점)

가. 연구실적물 인정

- 1)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초빙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 [별표 3-2]를 적용함
- 2) “초빙분야별 양적심사대상 연구실적물 수준” 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대상으로 하되 **주저자만 인정**
※ 학술지 IF % 값 산출은 JCR랭킹*을 기준으로 함.
 - JCR랭킹 기준일 : 해당연도 7. 1.
 - [예시 : 2020.7.1. ~ 2021. 6.30. 발표 논문은 2020년도 발표(JCR YEAR 2019) JCR랭킹 적용]

○ 초빙분야별 양적심사 대상 연구실적물 수준 : 초빙분야별 연구 실적 참조(공고문 8p)

나. 초빙분야별 양적심사 평가배점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일반분야	700% 이상	600% 이상 ~ 7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300% 미만
임상분야 (응급수의학, 정형외과학, 산부인과학 병리학, 외과학, 치과교정학)	600% 이상	500% 이상 ~ 6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200% 미만

(단, 지원자가 NATURE, SCIENCE, CELL 게재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는 연구실적의 양적심사 점수를 만점으로 함)

3) 경력 심사(60점)

- 이차전지 분야, 재정 공공경제 분야, 방위산업 분야, 보건정책 및 행정 분야(4개 분야)
※ “연구실적의 질적심사 및 양적심사” 를 “경력심사” 로 대체함

가. 학력 및 경력의 전공 적부 심사

- 심사항목은 적·부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 로 판정한 경우에 부적격자로 함.

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

- 경력의 관련 정도 및 질(30점)
- 전공일치도(10점)
- 전공분야 발전 가능성(20점)

3.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구 분	평가항목
일반 분야(40점) 산학협력 분야(30점)	① 강의의 능숙도 및 완성도 (영어, 기타 외국어 및 한국어) ② 준비의 충실도 및 강의의 적절성 ③ 학문적 우수성 ④ 독자적 연구능력 및 전공분야 기여가능성

4. 면접 심사(10점)

- 가. 분야별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대상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하되, 심사 결과 점수 차가 최고 득점과 **3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최고득점자와 함께 면접 심사를 실시함
- 나.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및 연구능력, 임용 후 본교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다. 면접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 점수(전공 및 경력 심사,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면접 심사)합이 높은 사람을 합격으로 함

[별표 1]

연구실적연수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p>[2]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② 비전임교원은 상근인 경우는 100%, 비상근인 경우는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함 	60%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3]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법학실무교원으로 지원한 자가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6.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8.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9.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1.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3.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5.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70%

연구실적 인정비율(인문·사회계)

(단위 : %)

저자수 \ 게재지	SSCI, SCIE(IF % 구분), A&HCI 등재지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G20국가발행 국제학술지
	20% 이내, A&HCI 등재지	20% 초과 50% 이내	50% 초과		
1인 단독	250	210	180	120	100
2인 공저	170(210)	120(180)	90(150)	60(90)	60(80)
3인 공저	120(180)	90(150)	70(120)	50(80)	40(60)
4인 공저	90(150)	70(120)	60(90)	40(70)	30(50)
5인 공저	70(120)	60(90)	50(80)	30(60)	25(40)
6인 공저	60(120)	50(80)	40(70)	25(50)	20(35)
7인 공저	50(120)	40(70)	30(60)	20(40)	15(30)
8인 이상 공저	40(120)	30(60)	25(50)	15(30)	10(25)

* 2인 공저 이상의 ()안은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인정비율임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연구실적 인정비율(자연계)

(단위 : %)

게재지 저자수	SCI(E), SSCI (IF 구분), A&HCI 등재지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 재단등재지,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10% 이내	10% 초과 20% 이내, A&HCI 등재지	20% 초과 50% 이내	50% 초과		
1인 단독	300	250	200	150	120	100
2인 공저	190(250)	170(200)	120(150)	90(120)	70(90)	60(70)
3인 공저	140(220)	120(150)	90(120)	70(100)	50(80)	40(60)
4인 공저	110(200)	90(120)	70(100)	60(90)	40(70)	30(50)
5인 공저	90(150)	70(100)	60(90)	50(80)	30(60)	25(40)
6인 공저	70(150)	60(100)	50(80)	40(70)	25(50)	20(35)
7인 공저	60(150)	50(100)	40(70)	30(60)	20(45)	15(30)
8인 이상 공저	50(150)	40(100)	30(60)	25(50)	15(35)	10(25)

* 2인 공저 이상의 ()안은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인정비율임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 다만, 피인용지수 10% 이내의 SCI(E), SSCI 등재지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 주저자 비율을 적용함

전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초빙 지침

개정 2003. 10. 1. 개정 2004. 11. 12. 개정 2005. 5. 2. 개정 2005. 10. 19.
개정 2006. 6. 2. 개정 2007. 6. 21. 개정 2008. 1. 24. 개정 2008. 6. 27.
개정 2008. 12. 30. 개정 2009. 6. 15. 개정 2009. 12. 31. 개정 2010. 11. 24.
개정 2011. 8. 16. 개정 2011. 10. 24. 개정 2012. 8. 22. 개정 2012. 12. 13.
개정 2013. 11. 25. 개정 2013. 12. 6. 개정 2014. 5. 7. 개정 2015. 1. 8.
개정 2015. 3. 25. 개정 2015. 9. 14. 전부개정 2016. 4. 25. 개정 2017. 3. 24.
개정 2017. 9. 27. 개정 2018. 2. 12. 개정 2018. 3. 27. 개정 2018. 9. 6.
개정 2019. 5. 24. 개정 2019. 10. 11. 개정 2020. 4. 13. 개정 2020. 7. 1.
개정 2020. 10. 16. 개정 2021. 1. 25. 개정 2021. 3. 26. 개정 2021. 9. 16.
개정 2021. 11. 4. 개정 2022. 8. 22. 개정 2023. 4.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임용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전임교원의 신규초빙(이하“초빙”이라 한다)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임교원 신규초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규정,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7.>

제3조(전임교원 신규초빙의 원칙) ① 전임교원을 신규로 초빙하고자 할 때는 교원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우수한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신규로 전임교원을 초빙할 때는 「전북대학교 학칙」 제6조에서 정하는 각각의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에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초빙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초빙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초빙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인원 산정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그 해까지의 누적 신규 초빙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간초빙인원이 모집단위별로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초빙인원이 3명 이상 되는 연도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9. 27.>

④ 제2항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최초 초빙된 학과에서 전보 등으로 현재 소속이 변경된 전임교원은 초빙 공고 시 초빙 학과(부)의 전임교원으로 본다.<신설 2023. 4. 13.>

제3조의2(정원 배정 및 임용예정자 제도 등) ① 총장은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전임교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일반 배정 정원과는

별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약간 명을 추가 배정하고, 일반배정 정원과 동시에 신규초빙 절차를 진행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② 신규초빙 절차 진행 중 일반배정 정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로 대치하여 당해 학기에 임용하고,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원 발생 시마다 임용예정자를 순차적으로 임용한다. 단, 특별공개초빙 임용예정자를 일반공개초빙 임용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4., 제목개정 2017. 9. 27.]<개정 2021. 11. 4.>

제3조의3(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제고 목표제) ① 전임교원 총원 요청서 제출 시 학과(부) 전임교원의 직전 2개 학기의 강의담당 비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② 총장은 전임교원 정원 배정 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고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4.] <개정 2019. 5. 24.>

제4조(초빙의 구분) 전임교원의 신규초빙은 일반공개초빙과 특별공개초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제5조(초빙 공고) 총장은 신규로 전임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15일 전까지 초빙분야, 초빙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초빙분야의 결정 준거) 신규로 전임교원을 초빙할 분야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 분류표에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

제2장 일반공개초빙

제7조(지원자격) 전임교원의 신규초빙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다만, 산학협력중점 교수는 교육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라야 하며, 실무경력 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개정 2017. 9. 27.>

가. 예술계 실기분야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건축설계 분야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법학 실무분야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9. 5. 24.>

라. 실무경력이 요구되는 분야와 특수한 전공분야는 학사학위 취득 후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관련단체 등에서 10년(석사 학위자는 8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특별한 업적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2. 병역을 마쳤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면제받은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지원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학위논문 이외에 최근 4년 이내에 발표된 200%(의·치의학계의 임상분야는 1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이 있고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가. 이공계 및 의·치의·수의학과 기초분야는 최근 4년 이내에 SCI급 국제학술지에 단독저자·제1저자·교신저자(이하 “주저자”라 한다)로 2편 이상의 논문발표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17. 9. 27., 2019. 5. 24., 2019. 10. 11.>
 - 나. 의·치의·수의학과 임상분야는 최근 4년 이내에 SCI급 국제학술지에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발표실적이 있는 자
 - 다. 인문·사회 분야는 최근 4년 이내에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주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발표실적이 있는 자
 - 라. 질적심사 대상의 연구실적물로 주저자인 논문 200%(의·치의학 임상분야는 100%)를 제출한 자 <개정 2017. 9. 27.>
5.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SCI급 국제학술지가 없거나 발표가 극히 어려운 경우 또는 지원자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초빙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자 <개정 2017. 9. 27.>
6. 의학계의 임상분야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
7. 치의학계의 임상분야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자
8. 제1호의 실적연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7. 9. 27.>

제8조(지원서류) ① 지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출 및 접수는 초빙 공고 시 정한 절차에 의한다.

1. 지원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경력·채직증명서, 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각 1부
2. 학력·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최종학위논문 1부
4. 최근 4년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각 1부
5. 연구실적목록(서식 1-2) 1부[질적 평가 심사대상 논문 200%(의·치의학계의 임상분야는 100%)는 별도 명기] <개정 2020. 4. 13.>
6. 초빙 공고 시에 정하는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자료
7. 친인척(민법 제777조) 관계 또는 공동연구실적이 있는 전북대 전임교원 목록<개정 2021. 9. 16.> <개정 2023. 4. 13.>

② 연구실적물은 원본 또는 사본(표지, 목차 첨부)으로 제출하고, 연구실적물 목록에는 출판된 연구실적물을 ‘발표일, 학술지구분, 학술지명, 저자구분, 공동저자명, 저자수, Impact

Factor(IF), Impact Percent, 논문 제목, 인정비율(%), 학술지 등급'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③ 제7조제4호 및 제1항제4호의 연구실적물 인정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적용하고, 연구실적물 인정비율은 저자수와 역할 및 게재지 수준에 따라 [별표 3], [별표 3-2], 또는 [별표 3-3]과 같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9조(전형절차 등) ① 전임교원 일반공개초빙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사를 단계별로 실시한다. 다만, 영어강의 트랙제 운영 학과(부)의 사전 신청이 있을 경우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를 전공심사보다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심사 대상자는 초빙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7. 9. 27., 2019. 10. 11.>

1. 서류심사위원회 심사
2.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
3. 삭제 <2019. 10. 11.>
4. 삭제 <2019. 10. 11.>
5.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 <신설 2019. 10. 11.>
6. 면접심사위원회 심사 [제5호에서 이동 <2019. 10. 11.>]

② 제1항제1호의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에 합격한 초빙예정 분야의 지원자수가 분야별 초빙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1항제2호의 학부(과)심사위원회 심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0. 4. 13.>

제1절 서류심사위원회

제10조(서류심사위원회의 기능) 서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서류심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원인사부처장 및 교무과장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제12조(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심사 합격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합의에 의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 10. 11.>

③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또는 심사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개정 2017. 9. 27., 2021. 1. 25.>

제2절 학과(부) 심사위원회

제13조(학과(부) 심사위원회 기능) ① 학과(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학과(부) 또는 부서에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말하며, 지원자의 기초심사, 전공심사,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순서도 이와 같다. <개정 2017. 3. 24., 2017. 9. 27., 2018. 3. 27. 2021. 3. 26.>

② 학과(부)심사위원회는 “전공심사위원회”와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위원회”로 구분하며, 전공심사위원회는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실시하고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위원회는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1. 3. 26.>

제1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학과(부) 심사위원장은 학과의 경우 학과장이 되며, 학부의 경우에는 모집분야가 있는 전공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체척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이동 2021. 3. 26.>

② 전공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학내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심사위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및 조항이동 2021. 3. 26.>

1. 위원이 6인 이하일 경우 외부심사위원은 2인 이상
2. 위원이 7인 이상일 경우 외부심사위원은 3인 이상

③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학내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의 단서에 의해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를 전공심사보다 먼저 진행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하를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 3. 24., 2017. 9. 27. 개정 및 항이동 2021. 3. 26.>

제15조(심사위원 구성의 특례) ① <삭제 2021. 3. 26.>

② 신설학과의 심사위원은 모집분야와 관련 있는 학내 전임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예술계열 실기분야의 심사위원은 모집분야와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학내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내심사위원은 모집분야 학과(부) 또는 부서 전임교원으로 하되, 심사 가능한 전임교원이 부족할 경우 교수회의를 거쳐 관련 전공분야 전임교원을 학내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2018. 2. 12., 2018. 3. 27., 2021. 3. 26.>

1. <개정 2017. 9. 27.> <삭제 2018. 2. 12.>
2. <개정 2017. 9. 27.> <삭제 2018. 2. 12.>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학내 심사위원이 부족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 또는 학부내의

초빙분야 전공교수회의(이하 “학과 교수회의”라 한다)를 거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심사위원을 2배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내심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2021. 3. 26.>

④ <삭제 2021. 3. 26.>

제17조(외부심사위원의 자격) 외부심사위원은 모집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전공분야의 타 대학 학과(부) 전임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7.>

1.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3편 또는 150% 이상(임용시기와 관계없이 계열에 따라 [별표 3] 또는 [별표 3-3] 연구실적 인정 비율 기준)의 논문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17. 9. 27. 2021. 3. 26.>

2. 자연계열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4편 또는 250% 이상(SCI(E)급은 150% 이상)(임용시기와 관계없이 [별표 3-2] 연구실적 인정 비율 기준)의 논문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17. 9. 27., 2020. 4. 13., 2021. 3. 26.>

제18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학내심사위원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선정된 전임교원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9조의 단서에 의해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를 전공심사보다 먼저 진행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하를 교무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3. 24., 2017. 9. 27.>

② 외부심사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9조(심사위원의 제척 등) ① 지원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8. 22.>

1. 학위논문(석·박사) 지도교수
2.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4. 기타 특별관계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임명된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총장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서면으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3.>

제20조(심사위원의 의무 및 해촉 등) ① 각 단계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서식 4)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날까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안에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 지침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지 않을 경우 총장은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③ 제2항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위원을 사퇴한 위원은 향후 5년 간 심사위원 자격을 제한하며 이 경우 나머지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하되, 심사위원이 5인 미만이 되거나 외부위원이 심사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7., 2019. 10. 11.> [제목개정 2017. 9. 27.]

제21조(심사장소 및 방법) ① 전공심사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에서 체류하는 대상자의 경우 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지침의 일환 등의 사유로 학과(부)내 동의를 거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장소에서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4., 2019. 10. 11., 2020. 7. 1., 2021. 3. 26.>

제22조(심사위원회 심사 등) ① <삭제 2021. 3. 26.>

② 전공심사위원회와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위원회는 학과(부) 심사기준표[별표 2]에 의하여 객관·공정·합리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2021. 3. 26.>

③ 전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본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 9. 27., 2021. 3. 26.>

1. 기초심사 -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의 전공적부(서식 5, 5-2)

2. 전공심사

가. 질적심사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주저자에 한함, 서식 6, 6-2, 6-3)
<2019. 5. 24.>

나. 양적심사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의 양적 수준(서식 7, 7-2, 7-3, 7-4)

3. 삭제 <2017. 9. 27.>

④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7. 9. 27., 2021. 3. 26.>

1.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 공개강의 및 세미나(서식 10, 서식 10-2)

⑤ 제3항제1호의 심사항목은 적·부로 판단하되,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로 판정한 경우와 제3항제2호의 점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개정 2017. 3. 24., 2017. 9. 27., 2019. 10. 11.>

1. 일반 분야 : 전공심사 점수가 33점 이하 <신설 2019. 10. 11.>

2. 법조실무 및 산학협력 분야 : 경력심사 점수가 42점 이하 <신설 2019. 10. 11.>

⑥ 제3항제2호와 제4항제1호 심사항목의 총점은 90점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2019.

5. 24.>

⑦ 학과(부) 심사위원은 학과(부) 심사기준표(별표 2)에 의하여 항목별로 심사한 후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 9. 27., 2019. 10. 11., 2021. 3. 26.>

⑧ 산학협력중점교수, 법조 실무교원, 특수 학문분야의 경우 학과 심사기준표를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 <개정 2019. 10. 11.>

제23조(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 기능)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 10. 11.>

1. 학과(부) 공고 내용의 공정성
2. 학과(부)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3. 학과(부) 심사의 타당성
4.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부)로 재심사 요구
5. 서류심사위원회 심사에 합격한 초빙예정분야의 지원자수가 분야별 초빙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의 진행여부
6. 제22조제3항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대상자’의 선정
7. 제22조제4항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면접심사 대상자’의 선정
8.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부)로 공고 내용의 수정 요구
9.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초빙절차 중단 또는 조정
10. 전임교원 초빙 전형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11. 임용 직급 결정에 관한 사항
12. 제21조 및 제32조제3항의 화상 심사 진행여부<신설, 2020. 7. 1.>
13. 기타 전임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2020. 7. 1.>

[중전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3조제9호부터 12호까지로 이동 <2019. 10. 11.>]

제24조(전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 전형위원회는 교무처장, 교원인사부처장과 계열(인문·사회,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 등)별로 총장이 위촉하는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1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개정 2023. 4. 13.>

② 학과(부)심사위원회 심사위원과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 또는 지원자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교원인사부처장을 제외한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전형위원회 심사에서 제척된다. 다만 단일학과로 구성된 단과대학의 경우 학과(부)심사위원이 전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4. 13.>

④ 제1항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3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경우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9. 10. 11.>
[제목개정 2017. 9. 27.], [제목개정 2023. 4. 13.]

제25조(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대상자 선정 절차) ① 전형위원장은 학내심사위원회와 외부심사위원의 심사표를 집계하여 각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 각 1인을 제외한 심사표를 종합하여 학과(부)심사집계보고서(1차)(서식 13)를 작성하고, 함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초빙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대상자 중에서 심사 포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지원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초빙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7. 3. 24., 2017. 9. 27.>

② 전형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대상자 명단을 학과(부) 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명단을 통보받은 학과(부) 심사위원장은 표절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대상자들의 연구부정행위의 해당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전형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개정 2020. 4. 13.>

④ 학과(부) 심사위원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형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 10. 11.>

제26조(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결과 보고) ① 전형위원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과(부) 심사위원장이 제출한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위원의 심사표를 집계하여 각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하점 각 1인을 제외한 심사표를 종합하여 학과(부)심사집계보고서(2차) (서식 13-2)를 작성한다. <개정 2017. 9. 27.>

② 전형위원장은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결시자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점수로 심사한 경우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9. 5. 24.>

1. 일반 분야 :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점수가 28점<2020. 10. 16.>

가. 삭제 <2019. 10. 11.>

나. 삭제 <2019. 10. 11.>

2. 법조실무 및 산학협력 분야 :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점수가 20점<2020. 10. 16.>

가. 삭제 <2019. 10. 11.>

나. 삭제 <2019. 10. 11.>

③ 제2항의 적격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점수 고순위자 순으로 적격자를 결정하여 전형위원회 결과보고서(서식 14)를 작성하고 학과(부)심사집계보고서와 심사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 9. 27.>

제4절 <삭제 2019. 10. 11.>

제27조 삭제 <2019. 10. 11.>

제28조 삭제 <2019. 10. 11.>

제5절 면접심사위원회

제29조(면접대상자 결정) 총장은 전형위원회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받은 자 중에서 총 점수 고순위자 순으로 초빙예정인원과 같은 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되, 면접 포기자가 있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총 점수 최고득점자와 차순위자의 점수 차이가 3점 미만이면 그 차순위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7. 3. 24., 2019. 10. 11.>

제30조(면접심사위원회의 기능) 면접심사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면접 대상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개정 2021. 9. 16.>

제31조(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면접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3.>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초빙분야 대학(원)장(대학원 소속의 경우 대학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외국어면접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과(부)장을 면접심사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3.>

③ 당연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행자가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총장은 면접심사위원의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2019. 5. 24., 2019. 10. 11., 2022. 8. 22.> <신설 2023. 4. 13.>

제32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의사소통 능력, 교육 및 연구능력, 임용 후 본교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면접심사의 평가는 일반공개초빙의 경우, 10점 만점으로 하며, 출석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다만, 제29조 단서에 해당되어 면접대상인원이 초빙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공심사 점수,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점수, 면접심사 점수(최고점과 최하점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면접심사 점수의 평균)를 집계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7. 3. 24., 2017. 9. 27., 2019. 5. 24.>

③ 면접심사는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에서

체류하는 대상자의 경우 또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지침의 일환 등의 사유로 사전에 결정된 장소에서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2021. 3. 26.>

제33조(최종합격자 선발)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

② 최종합격(예정)자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학과(부)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불합격 처리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1.>

제34조(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용권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2. 최종합격자 선발 통지 후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경우 <개정 2017. 9. 27.>
3. 경력의 허위기재 또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설 2019. 10. 11.>
4. 친인척(민법 제777조) 관계 또는 공동연구실적이 있는 전북대 전임교원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3. 4. 13.>

제3장 특별공개초빙

제35조(특별공개초빙 요건 등) 특별공개초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신규초빙하고자 할 경우에 상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1. 학문적 명성이 매우 높은 석학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학자
3. 국내외 학·연·산·관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 연구비 수주 등을 쌓은 자
4. 특정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경력을 쌓은 자

제36조(특별공개초빙의 요청) 특별공개초빙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대학(원)장, 기타 부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2.>

1. 특별공개초빙 충원요청서
2. 해당 학과(부) 및 부서 전임교원 3분의 2 이상(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경우 전공 교실 전임교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다만, 소속 학과 교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서

제37조(지원자격 등) 특별공개초빙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절 특별공개초빙위원회

제38조(특별공개초빙심의위원회의 기능) 특별공개초빙분야 심의를 위하여 특별공개초빙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4.>

제39조(특별공개초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특별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해당 대학(원)장(소속기관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③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1. 4.>

제40조(위원의 제척 등) 삭제 <2017. 9. 27.>

제2절 전형절차

제41조(특별공개초빙 전형절차 등) 특별공개초빙의 전형절차,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등은 일반공개초빙의 전형절차 등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 9. 27.]

제42조(면접대상자의 선정) 삭제 <2017. 9. 27.>

제4장 신규임용

제43조(직급결정)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직급은 임용규정 제5조 및 7조 2항에 의하여 조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 직급결정에 필요할 경우 교수초빙 지원서류 접수마감일 이후 출판된 연구실적물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연구실적물의 추가 제출 기한은 최종 합격 통보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44조(직급결정의 예외) ①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과·연구소·사업단 등 소속(의과대학은 각 초빙분야의 총원 요청시 제출한 소속 전공 교실 또는 분과 소속) 교원의 2/3 이상 동의(단, 소속 교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전원 동의)와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호의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0. 10. 16., 2021. 3. 26., 2021. 11. 4.>

1. 부교수 임용

가.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9년 이상이고 임용예정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8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7. 9. 27., 2019. 10. 11., 2020. 10. 16., 2021. 1. 25.>

나. 4년제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자 <2020. 10. 16., 2021. 9. 16.>

다. 법조실무교원 : 법조실무경력 11년 이상인 자 <2020. 10. 16.>

라.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업체 및 공공기관 경력 14년 이상인 자 <개정 2017. 3. 24., 2017. 9. 27., 2019. 10. 11., 2020. 10. 16.>

마.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조교수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1. 1. 25.>

바. 각목에도 불구하고 전공분야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탁월함을 인정한 자 <신설 2021. 1. 25.>

2. 교수 임용

가.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15년 이상이고 부교수 자격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장이 승인한 경우 <개정 2017. 9. 27., 2019. 10. 11., 2020. 10. 16., 2021. 1. 25.>

나. 4년제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교수 직급으로 재직한 자 <2020. 10. 16.>

다. 법조실무교원 : 법조실무경력 22년 이상인 자 <2020. 10. 16.>

라.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업체 및 공공기관 경력 25년 이상인 자 <개정 2017. 3. 24., 2017. 9. 27., 2019. 10. 11., 2020. 10. 16.>

3. 초빙공고 시에 초빙 기준을 높여서 정하고 그 기준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기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연구실적물은 [서식 6] 또는 [서식 6-2], [서식 6-3]에 의하여 게재학술지 수준 등을 정하되 아래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7.>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A급 주저자 3편 이상을 포함하여 B급 이상

2. 자연계열은 A급 주저자 3편 이상을 포함하여 B급 이상 <개정 2019. 10. 11.>

③ 제2항의 연구실적물 등급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개정 2017. 9. 27., 2018. 2. 12., 2019. 10. 11., 2020. 4. 13.>

A급: SSCI, SCI(E) (IF 20% 이내), A&HCI 등재지

B급: SSCI, SCI(E) 등재지(IF 20% 초과 50% 이내)

C급: SSCI, SCI(E) 등재지(IF 50% 초과)

D급: SCOPUS 등재지

E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2. 자연계열 <개정 2018. 2. 12., 2019. 10. 11.>

A급: SCI(E), SSCI(IF 10% 이내)

B급: SCI(E), SSCI 등재지(IF 10% 초과 20% 이내), A&HCI 등재지

C급: SCI(E), SSCI 등재지(IF 20% 초과 50% 이내)

D급: SCI(E), SSCI 등재지(IF 50% 초과)

E급: SCOPUS 등재지

F급: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④ 제1항제1호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 환산은 [별표 1] ‘연구실적연수환산율 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7.>

제45조(임용) ① 최종합격자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및 제11조에 의한 임용구비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조치,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21. 3. 26.>

③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 중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46조(초빙절차의 중단)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당해 모집분야의 신규초빙 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의 범위 내에서 전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제47조(수당 지급) ① 전임교원 신규초빙과 관련하여 위촉된 외부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48조(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초빙 절차 등) ① 부속기관, 연구소 등 단과대학 소속이 아닌 전임교원의 신규초빙에 관한 사항은 대학 본부에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법학 실무분야 전임교원 신규초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세부시행계획)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6. 4.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2016.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4.)

이 지침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7.)

이 지침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2.)

이 지침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7.)

이 지침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이 지침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4.)

이 지침은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2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 [별표 1] 연구실적연수환산율산출기준
- [별표 2] 학과(부) 심사기준표
- [별표 3] 연구실적 인정비율(인문·사회계)
- [별표 3-2] 연구실적 인정비율(자연계)
- [별표 3-3] 실기실적 인정기준(예·체능계 실기분야)

- [서식 1] 전임교원 초빙 지원서
- [서식 1-2] 연구실적목록
- [서식 2] 서류심사표
- [서식 3] 분야별 지원자 내역
- [서식 4] 학과(부) 심사위원 서약서
- [서식 5] 전공 적부 심사표
- [서식 5-2] 전공 적부 심사표(법조실무, 산학협력)
- [서식 6]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표(인문·사회계)
- [서식 6-2]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표(자연계)
- [서식 6-3] 실기실적의 질적 심사표(예술계)
- [서식 7]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일반공개초빙)
- [서식 7-2]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특별공개초빙)
- [서식 7-3]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의·치·의학과 임상분야)
- [서식 7-4] 실기(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
- [서식 8] 경력 심사표(법조실무, 산학협력)
- [서식 9] 연구비 심사표
- [서식 10]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표(일반 분야)
- [서식 10-2]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표(산학협력 및 법조실무 분야)
- [서식 11] 지원자 개인별 기초 및 전공심사표
- [서식 12] 지원자 개인별 심사 집계표
- [서식 13] 학과(부) 심사집계보고서(1차)
- [서식 13-2] 학과(부) 심사집계보고서(2차)
- [서식 14]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 결과보고서
- [서식 15] 면접 심사표

연구실적연수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제4조제1항제2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 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p>[2]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60%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② 비전임교원은 상근인 경우는 100%, 비상근인 경우는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함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3]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법학실무교원으로서 지원한 자가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근무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6.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8.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9.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11.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3.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5.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70%

학과(부) 심 사 기 준 표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1.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의 초빙분야와의 전공 적부 여부	적/부	※ 전공적부 심사표 (서식 5, 5-2)
2.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40	※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표 (서식 6, 6-2, 6-3)
3.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의 양적 수준	10	※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 (서식 7, 7-2, 7-3, 7-4)
4. 공개강의 및 세미나	40	※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표 (서식 10)
합계	90	

[별표 3] <제목개정 2017. 9. 27., 개정 2018. 2. 12., 2020. 4. 13.>

연구실적 인정비율(인문·사회계)

(단위 : %)

게재지 저자수	SSCI, SCI(E)(IF % 구분), A&HCI 등재지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 재단등재지, G20국가발행 국제학술지
	20% 이내, A&HCI 등재지	20% 초과 50% 이내	50% 초과		
1인 단독	250	210	180	120	100
2인 공저	170(210)	120(180)	90(150)	60(90)	60(80)
3인 공저	120(180)	90(150)	70(120)	50(80)	40(60)
4인 공저	90(150)	70(120)	60(90)	40(70)	30(50)
5인 공저	70(120)	60(90)	50(80)	30(60)	25(40)
6인 공저	60(120)	50(80)	40(70)	25(50)	20(35)
7인 공저	50(120)	40(70)	30(60)	20(40)	15(30)
8인 이상 공저	40(120)	30(60)	25(50)	15(30)	10(25)

* 2인 공저 이상의 ()안은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인정비율임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연구실적 인정비율(자연계)

(단위 : %)

게재지 저자수	SCI(E), SSCI (IF 구분), A&HCI 등재지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 재단등재지,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10% 이내	10% 초과 20% 이내, A&HCI 등재지	20% 초과 50% 이내	50% 초과		
1인 단독	300	250	200	150	120	100
2인 공저	190(250)	170(200)	120(150)	90(120)	70(90)	60(70)
3인 공저	140(220)	120(150)	90(120)	70(100)	50(80)	40(60)
4인 공저	110(200)	90(120)	70(100)	60(90)	40(70)	30(50)
5인 공저	90(150)	70(100)	60(90)	50(80)	30(60)	25(40)
6인 공저	70(150)	60(100)	50(80)	40(70)	25(50)	20(35)
7인 공저	60(150)	50(100)	40(70)	30(60)	20(45)	15(30)
8인 이상 공저	50(150)	40(100)	30(60)	25(50)	15(35)	10(25)

* 2인 공저 이상의 ()안은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의 인정비율임

* 3인 이상이 공동주저자인 논문의 경우, 모든 주저자에게 공동저자의 인정비율을 적용함

* 다만, 피인용지수 10% 이내의 SCI(E), SSCI 등재지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게 주저자 비율을 적용함

실기실적 인정기준(예·체능계 실기분야)

(단위 : %)

연 구 실 적	인정비율(%)	비 고
<p>1. 미 술</p> <p>가. 공모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한민국 공예대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 입선 1회 ○ 특선이상 1회 ○ 대상 1회 <국제공모전> ○ 입선 1회 ○ 특선이상 1회 ○ 대상 1회</p> <p>나. 지역(시, 도) 및 전국 규모 공모전 ○ 입선 1회 ○ 특선이상 1회 ○ 대상 1회</p> <p>다. 공인된 전시회 ○ 개인전 1회 ○ 아트페어와 부스개인전 1회 ○ 2인전 1회 ○ 3인전 1회 ○ 국내기획전(국·공립, 시·도립 미술관기획 및 박물관 기획) 1회 ○ 국외기획전(화랑, 미술관, 박물관 기획) 1회 ○ 기타(상기한 기획전 이외) 기획전 1회 ○ 한국미술협회전, 한국공예가 협회전 1회 ○ 공인된 단체의 회원전 및 단체전 1회</p> <p>라.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 국내화랑 및 미술관 초대전, 시·도미술대전의 초대작가전 1회 ○ 국내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초대전 1회 ○ 국외화랑 및 미술관, 박물관 초대전 1회 ○ 국제 비엔날레 및 트리엔날레 초대전 1회 ○ 기타(상기한 초대전 이외) 초대전 1회</p> <p>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운영위원 1회</p> <p>바.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운영위원 ○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한민국 공예대전,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운영위원 1회 ○ 공인된 공모전(전국규모, 시·도 단위) 심사위원·운영위원 1회</p> <p>사.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p> <p>2. 음 악</p> <p>가. 국내외에서 공인된 독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 1회</p> <p>나. 국내외에서 공인된 협연 1회 및 전곡 지휘</p> <p>다. 공인된 발표회의 3중창이상, 3중주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반주 1회</p> <p>라. 국내외에서 공인된 종합연주회 등</p>	<p>50</p> <p>100</p> <p>200</p> <p>100</p> <p>150</p> <p>200</p> <p>20</p> <p>50</p> <p>80</p> <p>100</p> <p>80</p> <p>50</p> <p>30</p> <p>50</p> <p>50</p> <p>20</p> <p>30</p> <p>30</p> <p>20</p> <p>30</p> <p>50</p> <p>50</p> <p>100</p> <p>20</p> <p>70</p> <p>100</p> <p>50</p> <p>100</p> <p>100</p> <p>70</p> <p>50</p>	<p><미 술> * 공인 : 초빙 공고의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한다. * 기타 명확한 것 이외의 것은 단체전으로 처리한다. * 동일 작품의 전시는 1회에 한하여 평가한다.</p> <p><음 악> * 공인 : 초빙 공고의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한다. * 동일한 레파토리로 4년 이내에 행한 연주는 평가대상에서</p>

연 구 실 적	인정비율(%)	비 고
○ 국내·외에서 공인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30	제외한다.
○ 협주곡 협연, 오페라 주역 1회	100	
마. 공인된 제작사에 의한 음반제작 및 비디오 제작	50	
바.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00	
3. 체 육		<체 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1회	100	* 공인 : 초빙 광고의 세부심사기 준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한다.
나. 올림픽 경기출전	100	
다. 전국대회 입상 2회	100	
라.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100	
마.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00	
바.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00	
4. 무 용		<무 용>
가. 무용공연		* 공인 : 초빙 광고의 세부심사기 준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한다.
○ 무용개인발표회 대극장	100	
○ 무용개인발표회 소극장	70	
○ 안무 단독(1시간 안무 공연 기준)	50	
○ 공동 안무 2인(1시간 안무 공연 기준)	10	
○ 재구성 및 제안무(클래식발레, 한국전통춤)	30	* 순회공연안무는 첫 1회 공연만 평가한다.
○ 각종 공연 안무(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20	
나. 출연		
○ 독무 대극장	80	
○ 독무 소극장	70	
○ 2인 이상 군무 대극장	50	
○ 2인 이상 군무 소극장	40	
다. 수상실적		
○ (사)한국무용협회 주최 무용제 1위	200	
○ (사)한국무용협회 주최 무용제 2위	150	
○ (사)한국무용협회 주최 무용제 3위	100	
○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00	
라. 행사실적		
○ 법인단체 예술감독	100	
○ 기획, 대본, 무대감독, 연출 대극장	100	
○ 기획, 대본, 무대감독, 연출 소극장	70	
5.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
가. 국제전, 산업디자인전, 한국산업디자인상(PINUP), 미술대전등 공모전		* 공인 : 초빙 광고의 세부심사기 준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한다.
○ 입선 1회	50	
○ 특선 1회	100	
○ 대상 등(특선 이외의 상)	150	* 동일 작품의 전시는 1회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규모 공모전		
○ 특선이상 1회	50	
○ 입선 1회	30	
다. 전시회		
○ 개인전 1회(15점이상/미만)	100/70	
○ 2인전 1회(7점이상/미만)	50/20	
○ 기획전 1회	50	
라. 단체전, 회원전		
○ 국제규모 1회	70	
○ 국내규모 1회(사단법인단체)	50	

연 구 실 적	인정비율(%)	비 고
○ 기타 1회	20	
마. 국내외 초대전 출품		
○ 국제규모 1회	100	
○ 국내규모 1회(사단법인단체)	70	
○ 기타 1회	50	
바. 국제전 심사위원 1회	100	
사. 한국산업디자인상(PINUP),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등 심사위원		
○ 한국산업디자인상(PINUP),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국제규모 심사 심사위원 1회	100	
○ 전국규모 공모전 심사위원 1회(사단법인단체)	70	
○ 시도 단위 규모 공모전 및 전람회심사위원 1회	50	
○ 기타 심사위원 1회	20	
아.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00	

[서식 1-2] <개정 2017. 9. 27., 2019. 10. 11., 2020. 4. 13.>

연구실적목록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과(전공) 분야
지 원 자 :

일련 번호	구분	발표일	학술지 구분	학술지명	저자 구분	공동저자명	저자 수	Impact Factor	Impact percent	논문제목	인정비율 (%)	학술지 등급	비고
													석사
													박사
										질적심사 논문 계			
										4년 이내 논문 계 (질적심사 + 양적심사)			

□ 작성요령

1. 작성대상은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질적심사 대상논문, 양적심사 대상논문이다.
 - ※ 질적심사 대상논문은 지원자가 신청한 우수논문 순서대로 200%가 되는 것까지만 인정하여 평가한다(다만, NATURE, SCIENCE, CELL 논문은 제출된 연구실적물에 한해서 평가한다.).
 - ※ 질적심사 대상논문은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지정하여야 한다.
2. 일련번호는 ‘질적심사논문’ 부터 시작한다.
3. 발표일은 논문의 경우 “논문집 발행일자” 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학술지구분은 계열별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에는 SSCI, SCI(E) (IF 20% 이내), A&HCI 등재지, SSCI, SCI(E) 등재지(IF 20% 초과 50% 이내), SSCI, SCI(E) 등재지(IF 50% 초과),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 나.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SCI(E), SSCI 등재지(IF 10% 이내), SCI(E), SSCI(IF 상위 10% 초과 20% 이내), A&HCI 등재지, SCI(E), SSCI, 등재지(IF 상위 20% 초과 50% 이내), SCI(E), SSCI 등재지(IF 50% 초과), SCOPUS 등재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G20 국가발행 국제학술지
5. 학술지명란에는 학술지명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6. 저자 구분란에는 지원자 역할에 따라 각각 ‘단독’,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주저자’ 로 기재한다.
7. 공동저자명란에는 지원자를 포함한 공동저자 전체의 이름을 기재한다.
8. 저자수란에는 연구 참여자 전원의 수를 기재한다.
9. Impact Factor는 발표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10. Impact Percent는 발표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11. 인정비율은 [별표 3], [별표 3-2] 및 [별표 3-3]을 적용한다.
12.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다.
 - 가. 논문집 발표기간 기준 : 0000. 00. 00 ~ 0000. 00. 00
 - 나. 논문은 접수마감일 현재 권, 호, 쪽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논문집으로 출판된 논문을 인정하고, 발표일자와 쪽이 명확하지 않거나 게재예정인 논문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지원자가 발표일자, 발표학술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대상 논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 인정기간 외의 연구실적물, 초빙분야와 관련 없는 연구실적물 및 위의 제4호에 언급되지 않은 연구실적물은 불인정한다.
13. 반드시 본교에서 정한 온라인에 접수하고 출력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 목록작성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서식 2]

서류심사표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과(부) 분야
 지원자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별 :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
자격 (교육 및 연구경력)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병역	병역을 마친자 또는 면제자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학위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연구실적물	200%(의·치의학계의 임상분야는 100%)		
	계열별 조건 충족 연구실적물		
자격증 유무	전문의(의학계 임상분야), 전공의(치의학계 임상분야), 수의사(수의학 임상분야) 등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경력(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전역예정증명서)		
	연구실적물 목록		

- * 교육 및 연구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 * 본 심사표는 초빙분야 심사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심사 위원	교무처장	교원인사부처장	교무과장
	(인)	(인)	(인)

관정	
----	--

[서식 5] <개정 2017. 9. 27., 2019. 10. 11.>

전공 적부 심사표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과(부) 분야
지원자 성명 :

심사자료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
전공 적부 평정	적() / 부()
불일치 사유	

* 전공적부 심사는 최종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학위논문과 연구실적물이 모두 “부” 일 때 지원자의 전공이 모집분야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명 : (인)

전공 적부 심사표(법조실무, 산학협력)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과(부) 분야
지원자 성명 :

심사자료	학력 및 경력 ¹⁾
전공 적부 평정 ²⁾	적() / 부()
불일치 사유 ³⁾	

- 1) 전공 적부 심사는 “학력 및 경력”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 또는 “부” 로 판정한다.
- 2) 심사결과를 ‘전공 적부 평정’ 의 해당란에 ○표로 표시한다.
- 3) “부” 로 판정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불일치 사유를 자세히 적시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 성명 : (인)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표(인문·사회계)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순번	논문제목	인정비율 (A)	논문의 질적 평가				계(C)
			학술지 수준 (50점)	논문의 질 (25점)	전공 일치도 및 지원자의 논문 기여도 (25점)	소계 (B)	
1							
2							
3							
4							
계							
* 평가요지를 50자 이내로 기재							
최종 환산 점수(D)							

- * 게재학술지 수준은 A급인 경우는 50점, B급인 경우는 47점, C급인 경우는 45점, D급인 경우는 40점, E급인 경우는 30점으로 한다.
- * 논문의 질은 25점, 22점, 19점, 16점 중에서 택일한다. 한편, 논문의 질의 평가요소는 논문의 독창성, 실험과 이론의 상응 정도, 논문의 객관성과 충실도, 논리적 엄밀성, 결론의 실용성(창의성 및 타당성)으로 한다.
- * 전공일치도 및 지원자의 논문 기여도는 25점, 22점, 21점, 18점 중에서 택일한다.
- * 질적 평가의 논문은 지원자가 신청한 우수논문 순으로 200%까지만 평가하여 인정한다.
(단, NATURE, SCIENCE, CELL 논문은 제출된 연구실적물에 한해서 평가한다.)
- * 인정비율은 지원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을 적용한다.

계 산 수 식
* $C = A \times \frac{B}{100}$
* $D = \frac{C \text{의 합계}}{A \text{의 합계}} \times 40$
※ 위의 C, D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성명: (인)

연구실적의 질적 심사표(자연계)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순번	논문제목	인정비율 (A)	논문의 질적 평가				계(C)
			학술지 수준 (50점)	논문의 질 (25점)	전공일치도 및 지원자의 논문 기여도 (25점)	소계 (B)	
1							
2							
3							
4							
계							
* 평가요지를 50자 이내로 기재							
최종 환산 점수(D)							

- * 게재학술지 수준은 A급인 경우는 50점, B급인 경우는 40점, C급인 경우는 30점, D급인 경우는 25점, E급인 경우는 20점, F급인 경우는 10점으로 한다.
- * 논문의 질은 25점, 22점, 19점, 16점 중에서 택일한다. 한편, 논문의 질의 평가요소는 논문의 독창성, 실험과 이론의 상응 정도, 논문의 객관성과 충실도, 논리적 엄밀성, 결론의 실용성(창의성 및 타당성)으로 한다.
- * 전공일치도 및 지원자의 논문 기여도는 25점, 22점, 21점, 18점 중에서 택일한다.
- * 질적 평가의 논문은 지원자가 신청한 우수논문 순으로 200%(의·치의학과 임상분야는 100%)까지만 평가하여 인정한다.(단, NATURE, SCIENCE, CELL 논문은 제출된 연구실적물에 한해서 평가한다.)
- * 인정비율은 지원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2]를 적용한다.

계 산 수 식
* $C = A \times \frac{B}{100}$
* $D = \frac{C \text{의 합계}}{A \text{의 합계}} \times 40$
※ 위의 C, D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성명: (인)

실기실적의 질적 심사표(예술계)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순번	논문제목	인정비율 (A)	논문의 질적 평가				계(C)
			예술성 수준 (50점)	독창성 (25점)	구성 및 발표공간의 객관성 (25점)	소계 (B)	
1							
2							
3							
4							
계							
* 평가요지를 50자 이내로 기재							
최종 환산 점수(D)							

- * 예술성 수준은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중에서 택일한다.
- * 독창성은 25점, 22점, 19점, 16점 중에서 택일한다.
- * 구성 및 발표공간의 객관성은 25점, 22점, 21점, 18점 중에서 택일한다.
- * 질적 평가의 실기실적은 지원자가 신청한 우수작품 순으로 200%까지만 평가하여 인정한다.
- * 인정비율은 지원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3]을 적용한다.

계 산 수 식
* $C = A \times \frac{B}{100}$
* $D = \frac{C \text{의 합계}}{A \text{의 합계}} \times 40$
※ 위의 C, D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성명: (인)

[서식 7] <개정 2017. 9. 27.>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일반공개초빙)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순번	논문제목	인정비율 (A)	전공일치도 (B)	계 (C)
1				
2				
3				
4				
5				
6				
7				
8				
9				
계				
종 합 평 가				
연구실적	배 점	해당점수	최종점수 (10점 만점)	
700% 이상	10			
600% 이상 ~ 700% 미만	9			
500% 이상 ~ 600% 미만	8			
400% 이상 ~ 500% 미만	7			
300% 이상 ~ 400% 미만	6			
300% 미만	5			

- * 지원자가 NATURE, SCIENCE, CELL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는 연구실적의 양적심사점수를 10점으로 한다.
- * 전공일치도는 70 ~ 100%를 부여한다.
- * 인정비율은 지원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 또는 [별표 3-2]를 적용한다.
- * 연구실적물은 공고문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의 연구실적만 인정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성명: (인)

[서식 7-2] <개정 2017. 9. 27.>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특별공개초빙)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순번	논문제목	인정비율 (A)	전공일치도 (B)	계 (C)
1				
2				
3				
4				
5				
6				
7				
8				
9				
계				
종 합 평 가				
연구실적	배 점	해당점수	최종점수 (10점 만점)	
1,000% 이상	10			
900% 이상 ~ 1,000% 미만	9			
800% 이상 ~ 900% 미만	8			
700% 이상 ~ 800% 미만	7			
600% 이상 ~ 700% 미만	6			
600% 미만	5			

- *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실적 중 NATURE, SCIENCE, CELL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는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 점수를 10점으로 한다.
- * 전공일치도는 70 ~ 100%를 부여한다.
- * 인정비율은 지원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 또는 [별표 3-2]를 적용한다.
- * 연구실적물은 공고문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의 연구실적만 인정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성명: (인)

[서식 7-3]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의·치의학과 임상분야)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순번	논문제목	인정비율 (A)	전공일치도 (B)	계 (C)
1				
2				
3				
4				
5				
6				
7				
8				
9				
계				
총 합 평 가				
	연구실적	배 점	해당점수	최종점수 (10점 만점)
	600% 이상	10		
	500% 이상 ~ 600% 미만	9		
	400% 이상 ~ 500% 미만	8		
	300% 이상 ~ 400% 미만	7		
	200% 이상 ~ 300% 미만	6		
	200% 미만	5		

- *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실적 중 NATURE, SCIENCE, CELL 논문의 주저자인 경우는 연구실적의 양적 심사 점수를 10점으로 한다.
- * 전공일치도는 70 ~ 100%를 부여한다.
- * 인정비율은 지원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2]를 적용한다.
- * 연구실적물은 공고문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의 연구실적만 인정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성명: (인)

[서식 7-4]

실기(연구)실적의 양적 심사표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순번	제목	인정비율 (A)	전공일치도 (B)	계 (C)
1				
2				
3				
4				
5				
6				
7				
8				
9				
계				
중 합 평 가				
	실기(연구)실적	배 점	해당점수	최종점수 (10점 만점)
	700% 이상	10		
	600% 이상 ~ 700% 미만	9		
	500% 이상 ~ 600% 미만	8		
	400% 이상 ~ 500% 미만	7		
	300% 이상 ~ 400% 미만	6		
	300% 미만	5		

- * 전공일치도는 70 ~ 100%를 부여한다.
- * 인정비율은 지원분야의 계열에 따라 [별표 3-3]을 적용한다.
- * 실기(연구)실적물은 공고문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의 실기(연구)실적만 인정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성명: (인)

[서식 10] <개정 2019. 5. 24., 2019. 10. 11., 2020. 10. 16.>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표(일반 분야)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공개강의 주제 :							
세미나 주제 :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비고 ¹⁾ (발표 언어)
			정도			점수	
공개 강의 및 세미나	강의의 능숙도 및 완성도 (영어, 기타 외국어 및 한국어)	(10)	A (10점)	B (8.5점)	C (7점)		
	준비의 충실도 및 강의의 적절성	(10)	A (10점)	B (8.5점)	C (7점)		
	학문적 우수성	(10)	A (10점)	B (8.5점)	C (7점)		
	독자적 연구능력 및 전공분야 기여가능성	(10)	A (10점)	B (8.5점)	C (7점)		
합 계		40					
부적격 사유 ²⁾							

1) 지원자가 발표한 언어는 반드시 비고란에 표시한다.

2) 심사 점수가 28점인 경우, 부적격 판단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성명: (인)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표(법조실무 및 산학협력 분야)

초빙예정분야 : 대학 학부(과) 분야
 지원자 성명 :

공개강의 주제 :							
세미나 주제 :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비고 ¹⁾ (발표 언어)
			정도			점수	
공개강의	강의의 능숙도 및 완성도 (영어, 기타 외국어 및 한국어)	(8)	A (8점)	B (6.5점)	C (5점)		
	준비의 충실도 및 강의의 적절성	(7)	A (7점)	B (6점)	C (5점)		
세미나	학문적 우수성	(7)	A (7점)	B (6점)	C (5점)		
	독자적 연구능력 및 전공분야 기여가능성	(8)	A (8점)	B (6.5점)	C (5점)		
합 계		30					
부적격 사유 ²⁾							

1) 지원자가 발표한 언어는 반드시 비고란에 표시한다.

2) 심사 점수가 20점인 경우, 부적격 판단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급: 성명: (인)

[서식 11] <개정 2017. 9. 27., 2019. 5. 24.>

지원자 개인별 기초 및 전공 심사표

1. 심사분야 : 대학 학과(부) 분야
2. 지원자 성명 :
3. 생년월일
4.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비고
1.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 실적물의 전공 적부	적/부		
2.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40		
3.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의 양적 수준	10		
계	50		

위와 같이 심사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대학 학과(부)
직명 :
성명 : (인)

지원자 개인별 심사 집계표

1. 심사분야 : 대학 학과(부) 분야
2. 지원자 성명 :
3. 생년월일 :
4. 심사내용

심사항목	심사위원										합계 (평균)
1. 최종 학위논문 또는 연구실적물의 전공 적부											
2.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3.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의 양적 수준											
소계											합계 (평균)

심사위원											합계 (평균)
4. 공개강의 및 세미나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장

(인)

* ‘합계(평균)란’ 은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 최하점 각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기재한다.

[서식 14] <개정 2017. 9. 27., 2019. 10. 11.>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회 결과보고서

모집분야	성명	심사점수	순위	비고

20 년 월 일

전임교원 공개초빙 전형위원장 (인)

전북대학교총장 귀하

